

# 2026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사업 안내문

- ▶ (공통)지원 기준 :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위소득 70% 이하 취약계층
- ▶ (공통)제외 대상 : 최근 3년 이내 센터 긴급임대료, 이사비, 간편집수리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, 달서구 거주자(‘달서주거복지센터’로 신청 문의)
- ▶ 신청 양식 : 대구도시개발공사, (사)자원봉사능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
- ▶ 신청 접수 : E-mail housewel@hanmail.net

## 1 이사비 지원 사업

■ 대상 : 중위소득 70% 이내 저소득 취약계층

■ 이사비 지원 사업 접수 안내

- 1) 매월 접수(단, 월별 예산 한도액 초과 시 접수 마감)
- 2) 이사 예정 월 기준 전월 또는 해당 월 신청 가능

예) 5월 이사 예정 → 4월 1일부터 신청(1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정상 일에 신청)

■ 제외 대상

- 1) 전·월세 보증금 1,500만원 이상 임대차계약 대상자(전세 환산 1억 3천만원 이상 대상자)  
- 월세의 전세환산식 :  $\{(월세 \times 12개월) \div 5\% (전월세환산율)\} + 보증금$

예) 보증금 1,000만원, 월임대료 50만원인 대상자의 경우

$\{(500,000 \times 12) \div 5\% \} + 보증금 1,000만원 = 1억 3천만원$ 으로 제외 대상에 해당

- 2) 대구광역시 관외 전입·전출 이사 가구
- 3) 접수(신청) 前 이미 이사를 진행한 가구

## 2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

■ 대상 • 임대료 부족(또는 없음)으로 인한 주거 상실 위기 가구

(의뢰서 접수 후 방문 상담 및 선정 과정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)

■ 내용 • 임대보증금 지원(최대 100만원 이내)

■ 제외 • 공공임대주택(영구·국민·매입·전세·행복 등)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(임대차계약)

- 총 보증금 300만원 초과 계약 가구

- 접수(신청) 前 이미 보증금 완납 가구

### 3 긴급임대료 지원 사업

- 목적 • 체납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퇴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
- 대상 • 임대료 장기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
  - 주소지가 없어 공공부조(생계급여 등) 신청 부적격 가구 등
- 내용 • 체납임대료 및 월 임대료 지원(최대 80만원 이내)
- 제외 • 신청(접수)시 이미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가 되었거나 퇴거가 확정된 가구
  - 체납임대료를 지원하여도 퇴거가 되거나, 퇴거가 확정된 가구
  - 체납 기간이 1~3개월 이내인 단순 체납 가구(단순 체납 여부는 센터 자체기준 판단)
  - 전·월세 보증금 1,500만원 이상 임대차계약 가구(전세 환산 시 1억 3천만원 이상 포함)

### 4 긴급주거비 지원 사업

- 목적 • 공공요금 등 체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퇴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
- 대상 • 전기·수도·도시가스·관리비 등의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가구
- 내용 • 체납비용 지원(최대 40만원 이내)
- 제외 • 체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도 퇴거가 확정된 가구
  - 체납기간이 1~3개월 이내의 단순 체납 가구(단순 체납 여부는 센터 자체기준 판단)
  - 전·월세 보증금 1,500만원 이상 임대차계약 가구(전세 환산시 1억 3천만원 이상 포함)

### 5 긴급(임시)지원주택 운영

- 대상 • 주거위기 가구로 임시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(센터 자체 판단기준 근거)
  - 긴급(임시)지원주택 퇴거 이후의 거처가 확보된 가구  
(예 : 구청(동행정복지센터)을 통해 '긴급주거지원' LH공공임대주택 신청 가구 등)
- 내용
  - 1) 최장 1년 이내 거주 가능 주택 제공(무보증, 월 임대료 5만원)
  - 2) 본인이 사용한 전기/수도/도시가스, 관리비 등의 공공요금은 개인 부담
  - 3)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, 월 임대료는 자동이체 신청 및 '관리비 전수금'(4만~10만) 납부
  - 4) 매월 1회 이상 센터의 상담(유·무선/방문)이 진행되며, 3회 이상 고의적 거부 시 조기 퇴

거 될 수 있음.(3개월 이상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가구 포함)

- 제외 • 긴급(임시)지원주택 거주 이후의 주거지 미확보 가구
  - 1년 이상 거주 목적 신청 가구

## 6 간편집수리 사업

- 대상 • 저장강박증 및 비위생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
- 내용 • 저장강박으로 인한 쓰레기 및 비위생 주거환경 청소•방역 지원
  -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(신청 前 반드시 센터에 문의 요망)
- 제외 • 대구시 '사랑의 집수리 사업'지원을 받은 대상자
  - 자가 가구 및 3촌 이내 혈족 사용대차 가구
  - 일반적인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(도배·장판, 싱크대 교체, 방충망 설치 등)

## 7 일상안심공간조성 지원 사업

- 대상 • 『돌봄통합지원법』 상 '통합돌봄 대상자'로 선정(예정)된 가구
- 내용 • 주거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(전기·조명, 경사로 및 안전손잡이 설치, 문턱제거,  
미끄럼방지 바닥 시공, 난방·환기 개선, 도배·장판 등)
  -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(방문 상담 및 선정 과정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)
- 제외 • 대구시 '사랑의 집수리 사업'지원을 받은 대상자
  - 『돌봄통합지원법』 상 '통합돌봄 대상자'로 미선정된 가구

## 8 청약저축 개설·유지 지원 사업

- 대상 • (공통)지원기준 충족 대상(본인 명의 청약통장 있는 경우 제외)
- 내용 • 청약저축 미가입자 개설 및 유지지원(2만원씩 5개월 지원)
- 목적 •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,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가산점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황이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

※ 동봉한 센터 리플렛 홍보자료 참조하시고, 사업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(053-350-0806, 0807, 0808)